

#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

제정 2009. 10. 0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 「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」에 근거하여, 경희대학교산학 협력단(이하 "산학협력단"이라 한다)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(이하 "국가연구개발사업"이라 한다)의 보안대책 수립·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 및 범위)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 및 범위는 산학협력단, 위탁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으로 한다.

제3조(연구보안관리심의위원회) ① 연구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보안관리심의위원회(이하 "보안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보안위원회의 구성은 산학협력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산학협력운영위원회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③ 보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보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이 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2. 보안관리규정 및 보안관리 현황의 보고에 관한 사항
3.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
4. 보안사고, 위규자 및 신원특이자 처리에 관한 사항
5. 연구대외비의 공개 및 대외제공에 관한 사항
6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분류기준)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며,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.

1. 보안과제 :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,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

2. 일반과제 :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

② 제1항에 의한 보안 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
2.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
3.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, 미래의 기술적·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
4. 국방·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

③ 국가정보원 「보안업무규정」에 따라 I·II·III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I·II·III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5조(분류절차) ① 연구책임자는 모든 연구개발과제신청서 제출시 [별지 1] 연구책임자 보안등급 분류 기준 점검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산학협력단장은 해당 과제에 대한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, 재분류할 수 있으며, 산학협력 단장은 그 결과에 따라 보안등급을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 연구비지원기관(이하 '전문기관'이라 한다)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산학협력단장은 보안등급 분류 결과를 보안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, 보안위원회는 그 적정성을 심의하여야 한다.

④ 연구책임자는 제2항의 과제담당자의 보안등급 분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안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보안등급 변경)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구책임자는 변경내역, 변경사유 등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안등급 분류 내용이 보안위원회의 보안등급 분류와 다를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안등급 분류에 따른다.

제7조(연구수행 중 발생하는 보안사항) 산학협력단 및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문기관의 보안관리 요구사항에 대해 보안과제로 분류하여 연구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8조(산학협력단 및 연구책임자의 보안) 산학협력단 및 연구책임자는 당해 특정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정보자료, 연구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9조(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) ①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보안과제를 수행할 경우에는 과제협약 시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[별지 2]의 보안서약서를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 시에는 신규 연구원의 보안서약서를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0조(연구대외비자료에 대한 보안조치) 산학협력단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'대외연구비'로 표시하여 관리하며 사건장치로 보관하여야 하고 연구책임자는 비밀보관 책임자로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1조(연구결과 대외발표 시 보안조치)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를 대외에 공개 또는 발표 할 경우에 참석자에 대한 보안서약 이행을 포함하는 보안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종료 후에는 참석자에게 제공했던 각종 비밀자료를 회수하여야 하며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12조(외국인 참여 제한) 산학협력단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외국인 참여 제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.

1. 외국기업, 국외연구기관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.
2. 외국인의 연구개발과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.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보안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.
3. 외국인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그 해당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가능 자료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하며, 특히 동향 인지 시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.

제13조(보안사고의 보고) 산학협력단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대외비의 누설 및 분실, 연구대외비보관용기 및 보관시설 파괴, 불법침입자에 의한 시설파괴, 시스템 해킹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일시·장소·사고자 인적사항, 사고내용 등을 즉시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4조(보안책임) 산학협력단 및 연구책임자, 참여연구원은 연구활동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,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.

제15조(기타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및 전문기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보안관리규정에 따른다.

#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보안등급을 확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계속과제의 경우 지원기관별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다.

